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이용선의원·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19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신성범·차규근·이용선

이종배 · 조지연 · 김종양

박정하 · 김준형 · 김재원

이성윤 • 박대출 • 박홍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 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집단에 비해 각종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실정임.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를 지원하고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의2·제14조의2·제14조의3 신설 등).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를 "의료 등"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친생자 4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친생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무국의 설치)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장례비지원)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는 제1항에 따른 장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3(복지지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피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야 한다.
 - 1. 의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 2.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 3. 피해자 단체의 운영지원
 - 4. 그 밖에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복지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제1조(목적)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	
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u>의료</u> 에 대한 실질적	의료 <u>등</u>
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	
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	
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	제2조(정의)
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	
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	
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에 해당하는 사람의 친생자
임신 중인 태아	
<u><신 설></u>	4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u> 친생자</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료지원) ① (생 략)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 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 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 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 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u><신 설></u>

제6조의2(사무국의 설치) ① 협의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료지원) ① (현행과 같
<u></u> 이
②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장례비지원)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는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
례비를 지급한다.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는 제1항에 따른 장례비
<u> </u>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

<신 설>

급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 제14조의3(복지지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피 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의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 2.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
 - 3. 피해자 단체의 운영지원
 - 4. 그 밖에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복지지원사업의 수 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